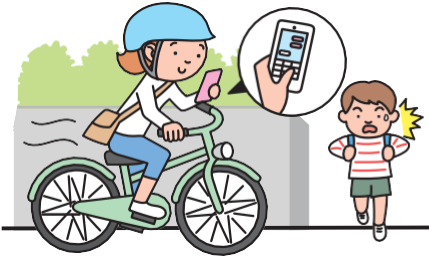


# 2024년 11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

## 자전거의 위험한 운전에 대해 새로운 벌칙이 정비되었습니다



### 운전중 스마트폰사용



스마트폰 등을 손에 든 채로, 자전거를 타며 통화하는 행위, 화면을 주시하는 행위가 새로이 금지행위가 되어, 벌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.

※정지중의 조작은 대상외

#### 위반자는

**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**

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,  
**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**



### 음주운전 및 방조



자전거의 음주운전 외에 주류 제공이나 동승, 자전거 제공에 대하여 새롭게 벌칙이 정비되었습니다.

#### 위반자는,

**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**

자전거의 제공자는,  
**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**

주류의 제공자, 동승자는,  
**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**



「운전중 스마트폰 사용」, 「음주운전」은  
자전거운전자 강습제도의 대상이 됩니다

### 자전거운전자 강습제도

자전거 운전에 관하여 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일정한 위반(위험행위)을 반복하여 실시한 자는 강습제도의 대상이 됩니다. ※수강명령 위반시 5만원 이하 벌금

**위험행위** 신호무시, 지정장소 일시부정지, 차단건널목 출입, 안전운전의무 위반, 통행구분 위반 등

중대한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합시다.